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35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혁(국선)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2023. 7. 2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46세)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
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8.경 대구 중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돈 다 안 갚으면 집에 못간다. 다 필요 없어, 돈 내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로 기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30

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현 _____